

2019년 6월 22일 시행 제25회 법무사 제1차 시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10문】 ①책형

【문41】 신고서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예규 및 선례에 의함. 이하 같음)

- ①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을 마친 신고서류는 1개월마다 다음 달 10일까지 접수순서에 따라 편철한 후 각 장마다 장수를 기재하여 그 목록과 함께 사건을 처리한 시·읍·면사무소를 감독하는 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 ②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4항의 이해관계인은 법원에 보관되어 있는 신고서류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고, 이때의 열람은 관계공무원이 보는 앞에서 하여야 한다.
- ③ 시·읍·면에 있는 신고서류의 열람 수수료는 무료로 한다.
- ④ 시·읍·면의 장이 신고서류 등을 수리한 때에는 그 신고사건에 무효사유가 없으면, 즉시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을 하여야 한다.
- ⑤ 신고서류에 의하여 이루어진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에 오기나 누락된 부분이 있음이 해당 신고서류에 비추어 명백한 때에는 시·읍·면의 장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감독법원의 허가 없이 직권으로 정정 또는 기록할 수 있다.

41. ③

- ① 규칙 §68①.
- ② 규칙 §72①③.
- ③ 호적용지로 작성된 제적부와 시·읍·면에 있는 신고서류의 열람 수수료는 건당 200원으로 한다(규칙 §28①).
- ④ 규칙 §45①.
- ⑤ 법 §18②, 규칙 §60② v.

【문42】 가족관계등록부를 재작성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甲·乙 부부가 이혼한 것으로 신고된 것을 잘못하여 丙·丁 부부가 이혼한 것으로 기록하였다가 후에 이를 정정회복한 가족관계등록부에 대한 재작성 신청이 있는 경우
- ② 甲남이 乙녀와 혼인한 것으로 신고된 것을 잘못하여 다른 사람인 丙녀와 혼인한 것으로 기록하였다가 후에 이를 정정회복한 가족관계등록부에 대한 재작성 신청이 있는 경우
- ③ 甲에 대한 사망신고를 잘못하여 다른 생존자인 乙에 대하여 사망기록을 하였다가 후에 이를 정정회복한 가족관계등록부에 대한 재작성 신청이 있는 경우
- ④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사의 합의가 없음을 원인으로 하는 혼인무효판결에 의한 등록부정정신청으로 해당 가족관계등록부가 정정된 후 혼인무효판결과 확정증명원만을 첨부하여 재작성 신청이 있는 경우
- 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20조에 의한 멸실고시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42. ④

- ①②③④⑤ 예규 제442호 [가족관계등록부의 재작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 ④ 당사자 사이에 혼인(입양)의사의 합의가 없음을 원인(「민법」 제815조 제1호, 제883조 제1호)으로 하는 혼인(입

양)무효판결에 의한 등록부정정신청으로 해당 가족관계등록부가 정정된 때 이로 인한 가족관계등록부재작성신청서에는 혼인(입양)무효판결과 그 확정증명 및 그 혼인(입양)무효가 한쪽 당사자나 제3자의 범죄행위로 인한 것임을 소명하는 서면(예) 형사판결문 또는 검사의 기소유예처분 결정문 등을 첨부하여야 하고, 제2조 제3호의 사유로 인한 가족관계등록부 재작성신청서에도 그 등록부정정이 한쪽 당사자나 제3자의 범죄행위를 원인으로 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는 이를 소명하는 위와 같은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예규 제442호 §3③).

【문43】 다음에 열거한 가족관계등록부 폐쇄사유 중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사유만으로 묶인 것은?

- A. 이중으로 작성된 경우
- B.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C. 착오 또는 부적법하게 작성된 경우
- D. 사망한 경우
- E. 부재선고를 받은 경우
- F. 정정된 가족관계등록부가 이해관계인에게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어 재작성하는 경우

- ① A, B, C
- ② D, E, F
- ③ C, E, F
- ④ B, D, F
- ⑤ A, C, F

43. ⑤

법 제11조(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등록사무의 처리 등) (등록적격상실)
 ② 본인이 사망하거나 실종선고·부재선고를 받은 때, 국적을 이탈하거나 상실한 때 또는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등록부를 폐쇄한다.

규칙 제17조(등록부의 작성과 폐쇄) (1국민 2등록부)
 ② 등록부가 법 제11조 제2항에 규정된 사유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폐쇄한다.
 1. 이중으로 작성된 경우
 2. 착오 또는 부적법하게 작성된 경우
 3. 정정된 등록부가 이해관계인에게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어 재작성하는 경우

【문44】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인의 가족관계등록신고 절차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인은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과 동일하게 보고적 신고사항에 대하여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의무를 진다.
- ② 신고의무가 있는 보고적 신고사항에는 고유의 보고적 신고와 전래의 보고적 신고가 모두 포함

된다.

- ③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인이 외국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아 전래의 보고적 신고를 하는 경우, 거주지 나라 방식에 의해 신고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가족관계등록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확정판결과 집행판결을 갈음할 수 있다.
- ④ 증서의 등본 제출방식에 의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인이 그 거주지 나라 방식에 의하여 실제적인 창설적 신분행위를 하여 신분행위가 성립된 경우에만 가능하다.
- ⑤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인은 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 또는 재외공관에서 근무하는 가족관계등록관에게 신고를 할 수 있으나, 다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 또는 재외공관에서 근무하는 가족관계등록관에게 신고를 할 수는 없다.

44. ③

①②③④⑤ 예규 제486호

③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인이 외국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아 재판상 이혼신고, 재판상 인지신고와 같은 보고적 신고(전래적 의미)를 하는 경우, 거주지 나라 방식에 의해 신고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으로는 가족관계등록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확정판결과 집행판결을 갈음할 수 없다(예규 제486호 2. 다. (4)).

【문45】 국제출생신고와 관련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외국인 부와 한국인 모 사이에 출생한 혼인외의 자녀는 그 외국인 부가 인지하기 전에는 외국인 부의 성을 아는 경우라도 외국인 부의 성을 따라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을 할 수 없다.
- ② 외국에 거주하는 한국인이 외국 관공서 등으로부터 교부받은 증서의 등본을 출생증명서에 갈음하여 출생신고서에 첨부하는 경우 그 사본을 첨부하고 원본의 환부를 청구할 수 있다.
- ③ 외국인 부와 한국인 모 사이에 출생한 혼인외의 자녀에 대하여 모가 출생신고한 후 한국인 모와 외국인 부가 혼인을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외국인 부와 혼인외의 자녀 사이에 친자관계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 ④ 외국인 부와 한국인 모 사이에 출생한 혼인중의 자녀가 외국인 부의 성을 따라 외국식 이름으로 기록된 후에 한국인 모의 성과 한국식 이름으로 변경하려면 성분 변경절차와 개명절차를 거쳐야 한다.
- ⑤ 외국인 부와 한국인 모 사이에 출생한 혼인중의 자녀는 한국인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다.

45. ②

①⑤ 예규 제518호 [자녀의 성과 본에 관한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 제11조

② 선례 제201102-1호 [외국에 거주하는 한국인이 외국 관공서 등으로부터 교부받은 증서의 등본을 출생증명서에 갈음하여 출생신고서에 첨부하는 경우 그 사본을 첨부하고 원본의 환부를 청구할 수 있는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은 사본 첨부를 허용하는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예규 제283호 5.는 출생신고서에 출생증명서의 사본을 첨부하여도 되는 경우를 ‘출생증명서를 의사나 조산사가 작성한 경우’로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외국 관공서 등으로부터 교부받은 증서의 등본을 첨부하여 가족관계등록관서에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 그 사본을 첨부하고 원본의 환부를 청구할 수 없다. (2011. 2. 21. 가족관계등록과-469 질의회답)

③ 예규 제431호 [한국인 모와 외국인 부 사이에 출생한 혼인외 자에 대한 인지 및 부모의 혼인에 따른 가

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 4. 유의사항

④ 예규 제502호[외국인 부와 한국인 모 사이에 출생한 혼인중의 자의 성과 이름 표기 및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하는 절차] 4. 바.

【문46】 다음 중 그 신고를 게을리한 때에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22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 것은?

- ①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출생의 신고를 하는 경우
- ② 부가 혼인 외의 자녀에 대하여 친생자출생의 신고를 하는 경우
- ③ 인지의 재판이 확정된 후 그 소의 상대방이 인지의 재판이 확정된 취지를 신고하는 경우
- ④ 미성년자를 입양하려는 사람이 민법 제867조에 따라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입양의 신고를 하는 경우
- ⑤ 국적상실자의 배우자가 국적상실의 신고를 하는 경우

46. ⑤

①②③ 보고적 신고의 신고적격자

④ 창설적 신고

⑤ 법 제97조(국적상실신고의 기재사항)

① 국적상실의 신고는 배우자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註 신고의무자 ⇒ 신고해태 ⇒ 과태료)

④ 국적상실자 본인도 국적상실의 신고를 할 수 있다. (註 신고적격자)

【문47】 다음 중 소를 제기한 사람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7조에 따라 가족관계 등록부의 정정을 신청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 ① 이혼무효의 재판이 확정된 경우
- ② 이혼취소의 재판이 확정된 경우
- ③ 혼인무효의 재판이 확정된 경우
- ④ 혼인취소의 재판이 확정된 경우
- ⑤ 입양무효의 재판이 확정된 경우

47. ④

④ 입양취소의 재판(법 §65), 파양의 재판(법 §66), 혼인취소의 재판(법 §73), 이혼의 재판(법 §78), 친양자 입양에 관한 재판(법 §67, §69, §70)과 같이 신분관계를 소급적으로 변동시키는 것이 아니라 장래효만 있는 경우에는 등록부정정사유가 될 수 없으므로 법 제107조의 확정판결로 인하여 등록부 정정을 하여야 할 때에 해당되지 않는다. 인지의 재판(법 §58)과 같이 신분관계를 소급적으로 변동시키지만 정정대상인 등록부의 기록이 없는 경우라든지, 실종선고취소의 재판(법 §92)과 같이 소급적 효력이 있지만 그 소급효가 제한되는 경우에도 정정사유가 아니라 기록사유로 봄이 타당하다. 예컨대, 혼인취소의 재판이 확정된 후에는 혼인취소의 신고를 하여야 하며, 혼인무효의 재판이 확정된 후에는 등록부의 정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문48】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 및 가족관계등록관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는 가족관계등록관인 소장을 둔다.
- ② 재외국민은 가족관계등록관에게 등록기준지 변경신고를 할 수 있다.
- ③ 재외국민에 관한 등록사무의 처리 및 지원을 위하여 법원행정처에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를 둔다.
- ④ 대법원장은 재외국민에 관한 등록사무를 가족관계등록관으로 하여금 처리하게 할 수 있다.
- ⑤ 가족관계등록관이 과태료 부과 대상이 있음을 안 때에는 신고의무자의 등록기준지 시·읍·면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고, 통지를 받은 시·읍·면의 장이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48. ②

① 규칙 §88②.

② 규칙 제4조 (등록기준지의 결정)

③ 당사자는 등록기준지를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새롭게 변경하고자 하는 등록기준지 시·읍·면의 장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④ 법 §4의2②.

⑤ 법 §124①단서.

【문49】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출생신고인이 부 또는 모인 경우에는 그 성명의 기록을 생략하여서는 안 된다.
- ② 부가 인지하지 아니한 혼인외의 출생자라도 부의 성과 본을 알 수 있는 경우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라 기록될 수 있다.
- ③ 한쪽 배우자에 대하여 실종선고의 신고가 있는 때에는 다른 배우자의 가족관계등록부에도 그 취지를 기록하여야 한다.
- ④ 미성년후견에 관한 사항은 미성년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일반등록사항란에 기록한다.
- ⑤ 동일한 사건에 수개의 신고가 수리된 경우에는 먼저 수리된 신고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49. ①

① 규칙 제51조 (기록근거의 기록)

② 제1항 제2호의 신고인 또는 신청인이 사건본인의 부 또는 모인 때에는 그 성명의 기록을 생략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성명의 기록을 생략하여야 한다.

1. 출생신고인이 부 또는 모인 경우

2. 출생신고인이 법 제46조 제4항에 따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우

② 규칙 §56.

③ 규칙 §54.

④ 규칙 §53.

⑤ 규칙 §57①.

【문50】 다음 중 교부(발급) 또는 열람을 청구(신청)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가 가장 좁은 것은?

- ① 무인증명서발급기에 의한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 ② 인터넷에 의한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 ③ 인터넷에 의한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사항 열람
 - ④ 시·읍·면의 장애인에 의한 가족관계증명서 교부
 - ⑤ 공인전자우편 방식을 이용한 가족관계증명서 교부
50. ①

① 무인증명서발급기 - 본인에게만(규칙 § 25).

②③ 인터넷 열람 및 발급 - 인터넷에 의한 등록부등의 기록사항 열람 및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발급은 본인 또는 배우자, 부모, 자녀(제적부 열람 및 제적 등·초본의 발급은 본인)가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친양자입양관계에 관한 기록사항 열람 및 증명서의 발급은 친양자가 성년이 되어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예규 제513호 § 5).

④ 시·읍·면의 장애인 - 본인 또는 배우자, 직계혈족(예규 제524호 § 2).

⑤ 공인전자우편 방식을 이용한 제외공관 - 본인, 배우자, 직계혈족(예규 제497호 § 6).